

## 어학 연수 (D-4-1)

### 신청 요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상기 교육기관에서 어학 연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

유학 비자로 대한민국 입국을 희망하는 모든 몽골 거주자는 비자 신청 센터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6개월 간 유효한 단수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증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을 위해 아래 서류의 원본 및 모든 서류의 정확한 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인 준비 서류
1) 우수인증대학. 2) 인증대학 3) 비자 제한 대학 4) 그외 1, 2, 3에 속하지 않는 대학
1. 사증발급신청서(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x4.5cm 컬러사진), 수수료 \$60(정부초청장학생·국방부 수탁생·코이카 연수생 제외)
2. 여권/여권사본 1매
3. 자기소개서(대사관 양식, MS Word 또는 한글 문서편집기 사용, 반드시 자필서명)
4. 표준입학허가서 및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연수계획서(강의시간표, 강사 구성표), 연수과정 운영 현황(대학 자율 서식)
<b>6. 유학경비 부담능력 입증자료</b> • 본인 또는 유학경비부담자의 몽골 은행잔고증명서(사증신청일 기준 2주 이내 발급) ※ 예치 증명서 발급일 기준 미화 \$10,000 상당액을 반드시 30일 이상 유지해야 하며, 심사일 현재 예치 증명서에 기재된 예치일로부터 예치증명서 발급일*까지 예치기간이 30일 미달하는 경우 재정능력 미흡(예치규정 위반) *예치증명서에 증명서 발급일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함  보증인1 - 보증인2  • 신분증 및 신청인과의 관계 입증서류(3촌 이내) • 유학경비 지원확인서 및 재직증명서 • 유학경비 부담자의 월수입 입증자료(사회보험증, 납세증명서 등)
<b>7. 혼인관계증명서(최초 신청자에 한함)</b> • 미성년자(19세 미만자)의 경우, 본인의 출생등록조회서(부모의 생년월일이 미기재된 경우 부모신분증 사본 제출) ※ 자녀가 있는 미혼자는 자녀의 출생등록조회서 추가제출
<b>8. 무범죄증명서(만 18세 이상, 최초 신청자에 한함)</b>
<b>9. 결핵 진단서(당관 지정기관 발행)</b>
<b>10.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원본</b> • 대학 재학생/중퇴자 : 고등학교 졸업장, 대학 재학증명서, 전 학년 성적증명서